

거창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

의안번호	21
------	----

제출일자 : 1998. 7. 11.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 제정이유

-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함은 물론 재난예방, 수습, 복구등 재난요인 해소 및 재난 발생시 응급조치를 위한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거 재난관리 기금의 조성, 운용 및 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주요골자

- 기금의 조성(안제3조)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기금운용수익금, 기타수입등(최근 3년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0분의 2의 해당금액)
- 기금운용계획 수립(안제4조)
- 매 회계연도마다 거창군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 기금의 용도 (안제5조)
- 재난위험시설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등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
- 중점관리대상시설등의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 재난이 발생한때 또는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때의 응급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민간소유시설의 안전조치를 위한 비용 일부용자등
- 기금의 관리·운용(안제6조)
-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거창군재난관리기금 계좌를 설치하고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 관리
- 회계공무원 (안제7조)
-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둔다
- 결산 및 보고 (안제8조)
- 매회계 연도마다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서를 작성 군의회에 제출

■ 개정근거

-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거창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거창군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위험시설·지역 : 긴급히 보수·보강하여야 하거나 사용 및 거주상의 제한을 요할 정도로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 및 지역
2. 중점관리대상시설·지역 : 구조 및 상태등에 위험요소가, 있거나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 제1호의 적립금을 매 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운용계획)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거창군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1. 재난위험지정시설 등(군수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등에 한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정비
2. 중점관리대상시설 등(군수가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중점관리대상 시설등에 한한다)의 안전진단
3. 법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4. 재난이 발생한 때 또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때에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

5.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용의 일부를 용자할 수 있다.

1.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재난 발생의 위험이 있는 민간소유의 시설로서 당해 소요자 또는 점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주민이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

제6조(기금의 관리) 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거창군재난관리기금 계좌를 별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한 회계관리는 거창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④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할 수 있도록 기금 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재난관리계장이 된다.

제8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년도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